제339회 임시회 2015.04.30.(목)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교 육 위 원 회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5.04.30.(목) 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5년 04월 13일

다. 회부일자: 2015년 04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2015년 04월 22일

(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O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관 김왕년)

#### 가. 제안이유

지방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「지방재정법」('14.5.28. 공포, '15.1.1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(2014.11.29. 공포, '15.1.1 시행)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4조)
- 2)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)
- 3)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, 교부신청, 교부결정, 교부 방법 등의 절차를 정함(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)
- 4)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,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함(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)
- 5)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함(안 제26조)
- 6)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 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의 보고,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)
- 7)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0조 및 제31조)
- 8) 관련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부칙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반기환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및「같은 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O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- ③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고,
- 안 제6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3명, 위촉직 위원은 12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,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음.
-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「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」 (법률 제12080호, 2014. 2.14.시행) 제15조에 따라 한쪽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정을 기하였음.
-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두어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, 안 제9조에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두어 불공정한 심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으며, 안 제10조에 위원의 해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, 적정성을 확보하였고,
- O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, 교부신청, 교부결정,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하였음.
-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정하고,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하였 으며,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고,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

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고,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을 보고하고, 지방보조사업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30조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
  안 제31조 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20일 이내에 이의를
 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부칙 제3조는 「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조항에서 "보조금"을 "지방보조금"으로 하는 등 다른 관련 조례를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재정법」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지방보조금"이란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,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  - 2. "지방보조사업"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.
  - 3. "지방보조사업자"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보조대상 사업) 교육감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- 2.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- 3.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

-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
- ③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교육부 장관(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)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##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

- 제6조(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  -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,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.
  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당연직 위원 : 교육국장, 행정관리국장, 기획관
  - 2. 위촉직 위원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학부모 등 충청북도 교육·학예사무 및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, 어느 한쪽의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.
  -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-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사무 관이 된다.
- 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- 2.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
- 4.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32조에 따라 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- 5.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
- 6.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
- 7.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8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·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 된다.
  -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 -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・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.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·기피·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

- 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- 4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1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 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

- 제15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보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

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.

-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교부신청)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
  - 2.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  - 3.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
  - 4.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
  - 5. 지방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
  - 6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1.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
  - 2.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
  - 3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
  - 4. 교부받고자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
  - 5.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
  - 6.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
  - 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
  - 7. 지방보조사업의 효과
  - 8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
  - 9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, 첨부 서류,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- 제17조(교부결정) 교육감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.

- 1.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
- 2.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
- 3.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
- 4.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(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제18조(교부조건)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 비율과 법령·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 -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제19조(교부결정 통지)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(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20조(교부방법)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,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. 다만,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제21조(용도외 사용금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교육감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 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2조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  -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- 제23조(실적보고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 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 - ④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
- 제24조(정산검사)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,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

- 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.
- 제25조(지방보조사업자의 신고)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1.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
  - 2.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
  - 3.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
  - 4.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
  - 5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
- 제26조(성과평가)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·대상·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·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- 제27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교육 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 - 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

- 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4.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
- 5.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- 6.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7. 교육감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-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- ⑤ 교육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.
- ⑥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(同種)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
- ⑦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 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

-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교육감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,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교 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,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 ① 교육감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, 성과 평가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교육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.
- 제30조(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) 교육감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.
- 제31조(이의신청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, 교부조건, 교부결정의 취소,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,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 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- 제3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3호의 개 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- 제6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  - ②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"보조금"을 각각 "지방보조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## □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경비지원) ① (생 략)	제6조(경비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	②
경우에는 <b>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</b>	
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## □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	제5조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
한 지원) ① 법에 따라 교육감이	한 지원) ①
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	
지원할 수 있는 <u>보조금</u> 의 범위는	 지방보조금
다음 각 호와 같다.	<del></del> 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	② 지방보조금
요한 사항은 <b>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</b>	
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	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다.	

## 관계법령발췌

- □ 지방재정법[시행 2015.1.1.][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, 일부개정]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 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    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   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  - ③ 삭제 <2013.7.16.>

[제목개정 2014.5.28.]

####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<신설 2014.5.28.>

- 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지방보조금(제17조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지방보조사업(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성격, 지방보조사업자(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  -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

부(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1.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
- 2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
- 3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32조에 따라 지방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
- 4.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
- 5.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
-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다르게 규정된 경우
- 2.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
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- 4.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제32조의4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 야 하며,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본조신설 2014.5.28.]
- 제32조의5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

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5.28.]

- 제32조의6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1.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  - 2.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
  - 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5.28.]

- 제32조의7(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 - 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 - 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 - 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 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.
 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(同種)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
  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 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 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[본조신설 2014.5.28.]

- 제32조의9(재산 처분의 제한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 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(이하 "중요재산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 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,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
  - 2. 양도, 교환 또는 대여
  - 3. 담보의 제공
  -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  - 1.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
  - 2.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- 제32조의10(이의신청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, 교부조건, 교부결정의 취소,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,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

야 한다.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4.5.28.]

- □ 지방재정법 시행령[시행 2015.1.1.][대통령령 제25781호, 2014.11.28., 일부개정] 제29조(기부·보조의 제한) ① 삭제 <2011.9.6.>
  -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. <개정 2014.11.28.>
  -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  - ④ 삭제 <2011.9.6.>
  -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11.28.>

[제목개정 2014.11.28.]

제30조(공익법인의 범위)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"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"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·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1.9.6., 2013.3.23., 2014.11.19.>

제37조의2(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

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사업명
- 2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(이하 "지방보조사업자"라 한다)의 주소·성명 또는 명칭
- 3.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
- 4.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11.28.]

제37조의3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)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 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11.28.]

- 제37조의4(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,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,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11.28.]

제37조의5(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)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(이하 이 조에서 "중요

재산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- 1.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
- 2. 선박, 부표(浮標), 부잔교(浮棧橋) 및 부선거(浮船渠)와 그 종물
- 3. 항공기
- 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
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,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11.28.]

제37조의6(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)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32조의 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